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협약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5. 2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5. 31.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6. 15.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위생안전팀장 이수향)

가. 제안이유

- 날로 증가되고 있는 화장수요에 범 광역적으로 대응하고, 선진 장사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6개 시(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가 공동 건립·운영 중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업에 군포시가 협약의 당사자로 추가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변경)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협약 개요

- 협약당사자: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 협약 주요내용
 - 적용범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토지, 건물 및 부속시설의 관리·운영 적용
 - 토 지: 화성시 매송면 속곡리 산12-5번지 일원
 - 시 설: 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및 그 부속시설)
그 밖의 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그 밖의 편의시설)
 - 운영체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관리·운영 대표권은 화성시가 가지며,
관리·운영은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
 - 재산의 귀속: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 등은 공동명의로 보존등기
(지분율은 건립비 분담 비율에 따름)

- 사용자 자격

구분	관내자격	관외자격	비고
화장시설	7개 시	7개 시를 제외한 타시군	
봉안시설	7개 시	해당없음.	
자연장지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장례식장	7개 시	7개 시를 제외한 타시군	

- 운영비

구분	비용부담 단체	분담방법	비고
가. 화장시설(식당, 매점을 제외)	7개 시	운영비 10% - 균등비율 운영비 90% - 이용자비율	
나. 봉안시설	7개 시	운영비 10% - 균등비율 운영비 90% - 이용자비율	
다. 자연장지,장례식장, 식당,매점	화성시	화성시 단독 부담	

2) 협약 변경 내용

- 협약 당사자 추가
 -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추가)
 - 6개 시 → 7개 시
- 재산 귀속에 따른 지분을 명확화
 - 군포시 참여에 따른 공동명의 지분율의 기준 명확화
- 군포시 운영 추가 참여 및 사업비 사용 관련 신설
 - 군포시의 참여 및 지위
 - ▶ 건립비 분담금 및 추가 참여부담금(이하 “군포시 참여 사업비”)) 납부 시 공동투자한 것으로 보며,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군포시 참여 사업비 납부
 - ▶ 군포시 참여 사업비 납부는 협약당사자와 협의 결정
 - 군포시 참여 사업비 사용
 - ▶ 군포시 참여 사업비는 향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시설 확장에 소요되는 추가 사업비로 사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함백산추모공원의 관리·운영 주체로서 기존의 6개 시 외에 군포시가 새로이 협약 대상자로 진입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변경되는 협약의 내용 중 2013년 당시 건립비 분담 비율에 따라 7개 시의 지분율을 책정하여 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향후 군포시가 건립비 분담금과 추가 참여부담금을 납부할 때 공동투자한 것으로 보아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지위를 득하는 것으로 정한바,
- 7개 시 간의 공평하고 균형있는 협약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장사시설의 특성상 1개 시가 진입함에 따라 시설의 가용범위가 축소되거나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계획 있는 운영방식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5. 2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5. 31.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6. 15.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관광진흥과장 채민우)

가.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관광지의 관리·운영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관광지의 입장료 및 관광시설의 관람료·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화성시 관광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관광지의 입장료 및 관광시설의 관람료·이용료에 관한 사항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성시의 관광지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서신면 궁평리의 해누리축제광장·힐링스토리워크·들꽃가든·해송숲속놀이터·해송림이 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검토결과, 조문의 표현 등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본 조례안을 통하여 향후 화성시 서부권 관광여건 조성의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우리 시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5. 2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5. 31.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6. 15.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관광진흥과장 채민우)

가. 제안이유

- 매향리의 역사·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목적으로 건립된 매향리평화기념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매향리평화기념관 운영을 위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기념관의 주요 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전시물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관람 제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시설 대관 및 대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기념관의 운영·발전을 위해 운영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목적에 적합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매향리평화기념관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갖추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람 제한사항, 대관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와 자료감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위탁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매향리의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문화적 가치를 대내외로 전파할 수 있는 기념관 운영에 그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르면, 박물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바, 본 조례안 중 “자료감정위원회”가 수증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안 제13조의 “자료감정위원회”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증심의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를 대폭 수정하여 가결

※ 수정대비표 붙임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수정 대비표

[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전	수 정 후
<p>제13조(자료감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념관에 자료감정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집 대상</u> 자료의 <u>진위 여부와 적정 가격의 결정</u> 2. <u>수집 대상 자료의 역사적·문화적 가치</u> 3. <u>기증품의 자료평가액 및 이에 상응하는 사례비의 결정</u> 4. <u>그 밖에 자료 수집에 필요한 사항</u> <p>② <u>자료감정위원회는 자료의 감정평가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되, 감정평가가 종료된 때에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u></p> <p>③ <u>자료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④ <u>자료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료감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⑤ <u>자료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p>제13조(자료감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u>기증·구입·대여등의 대상이 되는 자료에 관하여</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념관에 자료감정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의 <u>문화재적 가치</u> 2. <u>자료의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u> 3. <u>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수증·구입·대여등의 결정</u> 4. <u>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료평가액 및 사례비의 결정</u> 5. <u>제12조에 따른 구입가격의 결정</u> 6. <u>그 밖에 자료 수집에 필요한 사항</u> <p>② <삭 제></p> <p>② <u>자료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③ <u>자료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념관의 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u></p> <p>④ <u>자료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화성시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5. 26. 이해남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5. 31.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6. 15.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해남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은둔·고립형 가구를 찾아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려는데 입법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소외된 은둔·고립형 당사자 및 그 가족을 지역사회 복지체계 안으로 포용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려는데 제정의 의의가 있음.

나. 주요내용

- 조례의 기본이념 (안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가족 자조모임 지원 외의 사업 등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최근 은둔·고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은둔·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 사업의 내용으로 해당 가구의 발굴과 상담, 자조모임 지원, 자립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검토결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는 은둔·고립형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은둔·고립형 가구에 대한 범주의 설정이 모호한 만큼, 명확하고 체계적인 초기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5. 26. 공영애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5. 31.

다. 상 정 일 자 :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6. 15.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공영애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화성시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사업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려는데 입법의 일차적 목적이 있음.
- 나아가 이러한 규범적 토대 위에서 초고령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준비함으로써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고령친화도시’ 로 도약하려는데 제정의 의의가 있음.

나. 주요내용

-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 고령친화도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9조)
-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주관하는 고령친화도시 인증 여건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현재 분산 시행되고 있는 각종 노인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본법화함으로써, 노인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다양한 노인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시행 및 선순환적 사업개발 등을 가능케 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